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2012, Vol. 32, No. 4, 1147~1162.

# 법규정상에 나타난 고연령자 명명(命名)에 대한 비판적 고찰\*

김주현\*\*·김지혜\*\*\*

서울대학교 연구교수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위촉연구원

우리나라 법은 고연령자(高年齡者)를 지칭하는 용어로 여러 개를 혼용해 왔다. 본 연구는 법에서 고연령자는 누구이며, 고연령자를 어떤 사람으로 상정하고 어떻게 범주화하고 있는지에 관한 물음을 풀어보고, 고연령자를 지칭하는 명명이 갖는 의미를 비판적으로 고찰해보려고 한다. 2011년 10월 20일 현재 시행중인 법령과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헌법 제정 이후부터 현재까지 시행되었던 법령을 검토대상으로 삼았다. 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법규정상에서 고연령자에 대한 명명은 노쇠자, 노인, 고령자, 노령자, 노약자 등 다양한용어를 통해서 이루어져왔다. 이러한 명명이 고연령자 집단을 연령을 기준으로 구분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법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는 '노인'과 '고령자' 명칭을 살펴본 결과, 현재 우리사회의 고연령자에 대한 인식과 의미구성의 차이를 찾아볼 수 있었다. 사회적 보호 대상으로서 부정적 의미가 내포된 기표로서 '노인'이라는 명칭이 사용되고, 생산성을 지닌 존재로서의 기표는 상대적으로 중립적인 평가를 받는 '고령자'라는 명칭이 주로 사용되는 경향을 통해서 고연령자 집단에 대한 사회적 가치 부여를 내비친다고 할 수 있다.

■ 주제어 : 법률용어, 연령차별, 노인, 고령자, 명명, 사회적 가치

■ 투고일 : 2012. 07. 11. ■ 심사완료일 : 2012. 11. 20. ■ 게재확정일 : 2012. 11. 26.

### I. 서론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는 한국에서 고연령자 (高年齡者)1)집단이 인구사회적으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2011년 통계청이 발표한 전체 고령화율은 11.4 퍼센트이고, 농어촌 지역의 고령화율은 33.7 퍼센트로 이것을 뒷 받침하고 있다(통계청, 2012). 이러한 인구사회적 추세에 따라 고연령자 집단에 대한 사회적·정책적 관심이 고조되어, 많은 연구들은 고연령자 집단을

<sup>\*</sup> 본 논문은 2007년 정부(교육인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홍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7-411-J01602).

<sup>\*\*</sup> 제1저자/E-mail: vtsdpr2@snu.ac.kr

<sup>\*\*\*</sup> 제2저자/E-mail: humanistjh@empas.com

<sup>1) &#</sup>x27;고연령자'는 표준어로서 검색되지 않으며, 본 글에서 그 사용을 제안하는 용어도 아니다. 하지만, 그 한자구성 상 '전체인구 구성을 두고 봤을 때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는 뜻을 담을 수 있고, 본 글에서 비교·분석대상으로 삼은 법용어인 '노인', '고령자', '노령자' 등과 구별하기 위해서 편의상 임시로 사용하기로 한다.

분석 대상 또는 정책의 대상으로 설정하고 이들 집단의 생활상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사회,경제,문화의 측면에서 고연령자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고자 하는 연구에서 나아가 고연령자 집단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또 영향을 받는 요인을 가족,네트워크 등 미시적 차원에서부터 노동,경제,복지등 구조적 차원 등에서 찾는 연구로 확대되고 있다(김수완·백승호, 2011, 이철희, 2006).

그런데 정작 이러한 연구들이 대상으로 삼고 있는 고연령자 집단 그 자체가 우리사회에서 어떻게 규정되고 이해되고 있는가에 관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은 편이다. 국내에서 고연령자 집단의 정의에 대한 연구, 연령 규범이나 기준에 대한 연구(이금룡, 2005), 고연령자의 명명(命名)에 대한 연구 등은 매우 드물다. 국내 선행연구로 고연령자 집단의 명칭에 대한 연구(김미애, 2004)가 있었고, 고연령자 당사자 집단이나 언론에 의한 호칭 제안의 등이 있었다. 최근에는 고령화에 따라 사회문화적으로 나이든 사람들을 어떻게 이름 짓고 의미화할 것인지, 그러한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은 무엇인지를 짚어보는 논의(정진응, 2011)가 있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법에서 고연령자는 누구이며, 고연령자를 어떤 사람으로 상정하고 어떻게 범주화하고 있는지를 법률용어를 중심으로 파악하고

그러한 명명이 갖는 의미를 비판적으로 고찰하고자한다. 지금까지는 고연령자 집단을 분석 대상으로한 연구들이 대부분이었는데, 본 연구는 법 규정을살펴봄으로써 고연령자를 정의하고 규정하는 국가또는 사회를 연구대상으로한다. 공식적 언어에 의해 고연령자가 어떻게 명명되고 있는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사회가 고연령자에게 어떠한 역할과 사회적 위치를 부여하고 있으며, 법 규정은 이러한 의미생산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현재 우리나라 법은 고연령자를 지칭하는 여러 가지 용어를 혼용하고 있다. 고연령자를 지칭하는 용어가 사용된 법조문을 살펴보면, 지칭어에 대해 연령기준을 제시하며 명시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법은 단 한 개이며, 나머지 법에서는 지칭어를 사용하면서 연령3) 기준을 부가한 경우(예: 65세인 노쇠자)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다시 말해, 법은 고연령자에 대해 연령기준을 명시하여 법 적용 대상자를 비대상자로부터 구별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의 경우에는 명확한 연령기준 없이 고연령자 지칭어 그 자체가 법 적용의 대상자를 암묵적으로규정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몇 세를 기준으로 고연령자를 규정하는가라는 연령기준의 문제로서만 고연령자에 대한 법적 명명이 다루어지는 것은 한계가 있다(송기민ㆍ최호영, 2010)4). 즉 명시적 연령기준

<sup>2) 1998</sup>년 8월에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UN이 정한 '1999년 세계 노인의 해'를 맞아 노령인구의 지위향상과 권익증 진을 위한 호칭을 현상 공모하였으며, 2010년 6월 30일 각 분야별 고령 전문가로 구성된 한국 골든에이지포럼 은 '나이든 이에 대한 바람직한 호칭' 세미나를 주최한 바 있다.

<sup>3)</sup> 현재 우리나라 법령은 '연령'과 '나이' 용어를 구별하지 않고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다. 2012년 3월 20일 현재 시행중인 법령에서 '연령'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법은 총 496개이며, '나이' 용어를 사용한 경우는 총 147개이다. 하지만, 문화적으로 '나이'와 '연령'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방식은 구별된다. '연령'은 달력에 의해 계산되고 숫자로 표기되는 연대기적 연령을 뜻하며, 학교, 국가, 법률 등 다양한 근대적 제도 속에서 사람을 표준화된 방식으로 분류하고 수치화하기 위한 확정적 범주로 사용되는 반면, '나이'는 연령에 특정한 의미를 부착시키는 나이체제 속에서 의미화과정을 거친 결과물로, 나이 체제는 역사와 문화에 따라 변화하는 사회적 구성물이다(전희경, 2012). 본 연구에서는 공식적 영역인 법 규정을 검토하고 있으므로 '연령'을 주로 사용하기로 한다.

<sup>4)</sup> 본 연구를 수행하며, 2011년 10월 20일 현재를 기준으로 시행중이거나 시행예정인 법 가운데, 고연령자를 지칭하는 용어를 일정 연령 이상인 자로 정의하거나, 고연령자 지칭어와 연령기준을 함께 사용하여 정책대상을 범주화한 경우들을 비교해보았다. 그 결과 노령 혹은 노령자, 고령자, 노인 등의 용어가 연령기준에 따라 엄밀히 구분되어 사용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각 용어들이 지칭하는 대상자의 범주가 다르다고 볼 수 없었다. (부록 <표 1> 참조)

을 대신하거나 그것과 병행하여 사용되는 고연령자 지칭어의 의미를 다각도로 분석할 때, 법과 같은 공 식적 담론에서 고연령자를 어떻게 규정하는가의 핵 심에 접근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헌법 제 정 이후부터 2011년 10월 20일 현재까지 시행되었 던 법령과 현재 시행중인 법령을 검토대상으로 삼 고, 법제처에서 관리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 이지의 법령 검색 기능을 활용하였다5), 노인, 고령 자, 노령자, 노쇠자, 노약자 등을 검색어로 넣어 찾 은 법조문을 1차 자료로 삼았으며, 온라인상 검색기 능의 한계를 고려하여 법률과 연령에 관한 문헌 연 구를 참고하여 1차 자료를 보충하였다. 2011년 10월 20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령 가운데 '고령자'라는 용어를 명시한 조문이 있는 법령은 총 96개(법률 47 개, 시행령 37개, 시행규칙 12개)이며, '노령자'용어 를 사용한 조문이 있는 경우는 총 2개(법률 1건, 시 행령 1개)이다. '노인' 용어는 총 346개 법령(법률 183개, 시행령 106개, 시행규칙 57개)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노약자'는 총 22개 법령(법률 6개, 시행령 9 개, 시행규칙 7개)에서 사용하고 있다.

## Ⅱ. 이론적 배경

1. 집단에 대한 명명을 둘러싼 사회적 해 석과 법 규정

동일한 집단에 대한 사회적 명명이 다르게 나타 나는 사례를 발견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2004년 11 월에 '식모' 혹은 '파출부'라고 불리던 이들이 자신 을 '가정관리사'라고 불러 줄 것을 요구하며 '전국가 정관리사협회'를 출범시켰고, 식당업에 종사하는 여 성종사자들에 대한 호칭이 논란이 되자 '차림사'라 고 하는 새로운 용어가 제안되기도 하였다.6 또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명명이 논란이 되었으며가, 최 근에는 인종주의적 편견을 담은 '혼혈' 등의 용어를 지양하고 '다문화 가족'이라는 용어가 확대되고 있 다8). 이러한 변화들은 사회적 명명이 단순히 지시 기능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편견이나 혐오 를 반영하고 강화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에서 기반 한 것이다. 이 때문에 명명의 대상이 되는 집단들은 대안적인 명칭을 제안함으로써 자기 집단에 투영된 편견과 반감, 비난과 멸시 등에 문제제기해왔다.

그러나 편견을 담은 집단적 명칭은 계속해서 생 산되고 있다. 이와 관련된 기존 연구 중 주창윤 (2011)은 일상적 대중문화에서 나타나는 집단에 대 한 명칭을 구성주의적 시각에서 고찰했다. 2000년대 들어 대중매체와 인터넷에서 생산·유통되고 있는 '○○녀' 담론은 언어적 명명이 현실에 존재하는 인 구사회집단을 표현하는 수단이 아니라, 반대로 언어 적 명명을 통해 담론적 공간에서 특정한 성향과 속 성을 가진 가상 집단이 생산되는 방식을 보여준다. 이러한 가상 집단으로서 '〇〇녀'는 현실 차원에서 주로 20대 여성들에 대한 공격, 비난, 혐오의 정서를 투영한 것이다.

이러한 일상적 대중문화와 더불어, 법과 정책은 기존 일상용어를 공식화하거나 새로운 법률용어를 생산함으로써 이러한 명명의 정치에서 중요한 역할 을 해왔다. 일례로서 성매매에 관한 법령들을 고찰 해보면, 국가가 특정 집단을 통제하거나 관리하는 방식의 핵심에는 대상 집단에 대한 정의·분류·위

<sup>5)</sup> http://www.law.go.kr/main.html

<sup>6)</sup> 경향신문, 2012년 3월 15일, <'아줌마, 이모, 여기요'로 불리는 사람들>

<sup>7)</sup> 한국경제신문, 2010년 3월 20일, <홍성호 기자의 '말짱 글짱' : 우리를 슬프게 하는 말들>

<sup>8)</sup> 매일경제신문, 2004년 4월 27일, <가정용어 순화한다> ; 장애인신문, 2009년 9월 21일, <엄마, 왜 내가 다문화

계화가 위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박정미, 2011). 「윤락행위 등 방지법」(법률 제4911호)은 성판매여성 을 '윤락여성'이자 '요보호여자'로 정의하였다. 이것 은 정부가 성판매여성을 위험한 범죄자로 규정하면 서 동시에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연약한 존재로 바 라보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식품위생법시 행규칙,,「성병검진규칙」,「위생분야종사자 등의 건 강진단규칙」은 성판매여성을 유흥영업'종사자' 등 으로 규정하고 '서비스노동자'로 바라보았다. 이처 럼 성매매 관련법에서 동일한 대상을 '윤락여성'(범 죄자) 혹은 '유흥영업 종사자'(서비스노동자)로 명명 한 것은 각 명명에 반영된 법의 목적과 의도가 상이 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법은 적용대상을 정의하고 성격을 부여하는 적극적 기능을 하지만, 그러한 법 적 정의가 반드시 일관적이고 통일적인 것은 아니 다. 법적으로 상이하게 정의되고 호명된 성판매여성 들은 일관된 의미로 규정되지 않는 모순적 집단이 된다. 이렇듯 특정한 범주에 속하는 사람들에 대한 명칭과 그것의 변화를 통해서 대상이 되는 사회적 범주에 속한 사람들에게 부여된 사회적 의미를 가 늠할 수 있다. 긍정적 명칭과 부정적 명칭을 구별할 수 있으며, 부정적 명칭이 증가하거나 지배적일 때, 그러한 명명의 대상이 되는 집단이 사회적으로 주 변화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정진웅, 2011).

그렇다면 고연령자에 대한 법적인 영역에서의 명명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가? 우선 법은 일상 언어와 달리 강제력과 권위를 가진 공식적 언어라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공식적 언어에 의해 고연령자가 정의되고 명명될 때, 그것은 일상 언어의 참조점과 기준이 되고 언어적·비언어적인 사회적 실천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공식적 담론으로서 법적명명은 이미 존재하는 인구사회집단(연령집단)을 지시하는 수동적 기능에 머물지 않는다. 고연령자에대한 법적 규정은 고연령자가 누구인가를 정의하고가치를 부여하는 의미생산의 역할을 한다. 그리고법은 고연령자를 규정하기 위해 연대기적 연령기준

을 세우기도 한다. 이러한 연령기준은 사회문화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기존에 작동하고 있는 사회제도들 과의 관계에서 정당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을 때 타당성을 얻을 수 있다. 즉 법적인 연령기준이 단순한 법적 편의주의의 산물이 아니라 타당한 기준이 되기 위해서는 연령 그 자체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사회적인 맥락에서 법적 정당성을 가질 수 있어야한다. 이를 위해 법은 법적 대상을 연령에 따라 구획하는 것에서 나아가 해당집단을 고유한 속성을 공유하는 동질적 집단으로 구축한다. 바로 이러한 범주화에서 고연령자에 대한 법적 명명은 중요한역할을 한다.

법적 명명이 사용하는 언표 중 하나인 '노인'은 법에 앞서 존재했던 비공식적 담론들로부터 의미를 끌어온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법에 의해 명명 되고 법률적 체계 내에 자리를 잡게 되는 순간, 법 이전에 사용되었던 '노인'과는 구별되는 상이한 '노 인'이라는 법적 범주가 생겨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전근대사회에서 노인은 생물학적 연령으로서가 아 니라 여러 세대로 이루어진 체계 안에서의 특정 지 위, 즉 성인이 된 자녀가 있고 손자를 가졌다는 의 미로 이해되었지만, 현대사회의 연령규범과 법적 규 정에 따라 특정연령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의미를 얻 게 되었다 (Settersten Ir., Richard, 2003). 한편, 법은 변화한 사회현실에 개입하기 위해 전통적인 언표들 을 버리고 새로운 언어를 적극적으로 창안하여 사 회적으로 통용되도록 만들 수도 있다. 이렇게 법이 구성한 새로운 의미는 다시 일상생활의 비공식적인 언어활동의 자원으로 사용되기도 한다(Settersten Ir.; Richard, 2003).

## 고연령자 명명에 관한 선행 연구 및 국제 동향

고연령자 명명에 대한 기존 연구는 주로 고연령 자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이 일상생활의 다양한 측 면에서 고연령자에 대한 차별로 나타나는 사회적 현상을 설명하는 연령주의(Ageism)논의를 중심으로 나타났다(Palmore, E., 1982). 노년이나 고연령자들을 나타내는 용어들을 역사적으로 조명해보면, 고연령자 집단의 사회적 지위 하락과 맞물려 고연령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부정적 변화가 나타났으며(Herbert C. Covey, 1988), 고연령자 집단의 지위하락은 산업화, 도시화, 과학기술의 발전 등 사회구조적 원인이 매우 주요했다(Achenbaum, W. A., 1985; Cowgill, D., & Holmes, L., 1972, Maddox, G., 1970; Palmore, E. & Manton, K., 1974).

고연령자 집단의 사회적 지위 하락은 미디어, 인 쇄 매체 등에 나타나는 고연령자의 표상을 통해서 드러났다(Latika Vasil & Hannelore Wass, 1993). Nuessel(1982)은 고연령자를 지칭하는 용어들이 연 령차별적이고 성차별적인 의미를 포함하여 압도적 으로 부정적임을 발견했다. Barbato와 Feezel(1987) 은 다양한 연령집단을 대상으로 노화 관련 용어에 대한 태도를 조사하였는데, 모든 연령집단이 가장 선호한 용어는 mature american(원숙한 미국인), senior citizen(노령자), retired person(은퇴자)였으 며, elderly(노인), old(늙은) 등은 부정적인 용어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Palmore(2000)는 미국에서 고연령자를 지칭하는 용어들의 함축적인 효과를 논하면서 old(나이든), elderly(노인) 등은 부 정적인 함축이 있으며, older person(나이든 사람), retired person(은퇴한 사람), persons older than 60(60세 이상 나이든 사람) 등은 중립적이고, senior (원로), elder(연장자), veteran(노장) 등은 긍정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서 고연령자들에게 선호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old는 그 속에 오래되고 (antiquated), 구식이고(archaic), 노망(senile), 지친 (worn), 폐기된(discarded), 쇠약한(debilitated), 병약한(infirm), 노쇠한(frail) 등의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기 때문에 선호되지 않았다.9)

한편 서구에서 고연령자에 대한 공식적인 영역에 서의 명명을 살펴보면, 'the elderly'(고령자)와 'older person'(나이든 자)이 주로 사용되고 있는 것 으로 보인다. 유럽연합기본권헌장의 25조는 '노인의 권리'를 'The right of the elderly'라고 하고 있으며 (최호영, 2010), 1990년 10월 1일 '세계 노인의 날'도 'International Day of for the Elderly'로 공식명칭을 정했다(임춘식, 1999). 그런데 최근 들어 UN을 중심 으로 주로 'older person'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 는 것으로 나타난다. 1991년 UN이 발표한 'Principles for the Older Persons'과 2002년 발표된 고령화에 관한 <마드리드 국제행동계획: Madrid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on Ageing>을 보면 'older pers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United Nations, 1999; 이석규 역, 2002). 그리고 1999년 '세 계 노인의 해'의 공식 명칭은 'The year of Older Persons'이었고, UN이 정한 세계노인의 날의 공식 명칭도 'The International Day of Older Persons'로 바뀌었다(최호영, 2010).

고연령자 명명에 대한 국내 연구는 그다지 많지 않다10). 김미애(2004)는 마케팅 연구 분야에서 60세이상의 인구에 대해 사용되는 있는 명칭들을 조사하고, '노인', '노년층', '성숙인', '실버세대', 'G세대', '어르신', '시니어' 용어에 대한 대학생들의 평가적태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노인'이라는 용어보다는 '성숙인', '어르신'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고보고하였다.

<sup>9)</sup> 실제 비슷한 시기의 다른 연구(55세에서 75세 고연령자 868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old'라는 명명에 대해서 75.5% vs. 8.2% 정도로 강하게 싫어하고, 반면 'senior citizen'(75.1 vs. 7.8%), 'senior'(66.6 vs. 11.4%)에 대해서는 선호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Chafetz, P. K. et al. 1998.)

<sup>10)</sup> 본 연구는 고연령자 집단에 대한 정의나 연령기준에 대한 연구가 아니며, 고연령자 집단이 누구이냐의 문제에 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고연령자, 나이든 사람들을 사회에서 어떻게 명명하는가 하는 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다.

정진웅(2011)의 연구에서는 노년의 호명과 관련하여 언어적 표현을 통해 드러나는 갈등과 정치적함의를 논의하고 있다. 한국 사회의 연령주의적, 성차별적, 신분주의적 시각이 노년에 대한 호칭과 지칭의 의미를 주변화 시키고 있다고 보았다. 특히 '노인'이라는 용어에 대한 부정적인 사용을 지적하고, 노년의 호명과 관련된 일상의 언어적 실천에는 노년에 대한 고정관념과 차별적 시선이 반영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이렇듯 고연령자에 대한 사회적 명명에 대한 연구를 보면, 공통적으로 고연령자에 대한 명칭/호칭 등의 상징적이고 언어적인 현상이 현재 우리사회에서 특정 범주의 사람들, 즉 고연령자 집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한다. 사회에서 고연령자 집단이 어떻게 지칭되고, 어떻게 묘사되느냐에 따라 사회구성원들의 고연령자를 바라보는 관점과 견해는 달라질 수 있다. 나아가 고연령자에 대한 사회적 표상은 고연령자 자신의 자존감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Elizabeth S. Kelchner, 1999).

## Ⅲ. 고연령자에 대한 법적 명명의 의미 분석 및 비판

1. 사회적 약자로서의 '노쇠자', '노약자'11)

'노쇠자'<sup>12</sup>)라는 용어는 1950년부터 2008년까지 소수 법령에서 사용되었지만, 현재는 사라진 법용어 이다. 1950년에 제정되어 수형자에 대한 처우를 규 정하던「행형법」은 2007년 전부개정 전까지, 노쇠자 는 임산부와 같이 질병에 걸린 수용자에 준하여 처 우한다고 규정하였다(제30조). 더불어 무교육자 또 는 소년수형자에 대하여는 연령, 지식정도 기타 사 정을 참작하여 그에 상응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 지만, 심신미약자 또는 노쇠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는 조항(제32조)을 가지고 있었다. 「행형법 시 행령,은 1962년부터 2008년 전부개정 전까지, 질병 에 걸린 수용자에 준하여 처우하는 노쇠자를 70세 이상인 자로 규정하였다(제106조). 2008년부터는 노 인수용자를 65세 이상인 수용자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2008년에 제정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 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은 노인수용자에 대한 특 별한 보호를 위한 조치들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 다(제43조-제48조).

과거에「행형법」과「행형법 시행령」 외에 '노쇠자'라는 용어를 사용한 법으로는 다음 세 가지가 있다. 1957년에 제정된「재소자식량급여규정」은 1963년에 폐지되기 전까지 노쇠자를 특별한 부식을 받을 수 있는 자로 정하였다(제8조).「생활보호법」에서는 1961년에 제정되어 1999년에 폐지되기 전까지보호대상자 조건의 하나로 65세 이상의 노쇠자를 포함하였다(제3조 1항).「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은 1982년 제정 이후 1991년 전부개정 전까지, 양로시설 또는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려면 65세 이상의노쇠자이면서 다른 요건들을 갖추어야 한다고 정하였는데(제10조), 전부개정 후에는노쇠자용어를 삭제하고 연령 기준만 남겨두었다.

<sup>11)</sup> 법규정상 고연령자를 사회적 약자로 명명하는 또 다른 용어는 '노령자'이다. 2011년 10월 20일 현재를 기준으로 노령자 용어를 사용한 조문이 있는 경우는 법률 1개, 시행령 1개로 총 2개이다. '노령자(老齡者)'는 국어사전에서 표준어로 검색되지 않는 용어지만, 1999년에 「정보화촉진 기본법」에서 처음으로 법용어로서 사용되었다. 같은 법은 "장애인, 노령자, 저소득자 등 사회적 약자들이 정보화의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제16조의 2).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은 2008년 제정 이후부터 노령자를 사회적 약자로서 지능형 로봇을 이용하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받는 자로 명시하고 있다(제17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2007년부터 북한이탈주민 가운데 60세 이상인노령자는 장애인과 같이 취업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제34조의 2).

<sup>12)</sup> 과거 법령에서 '로쇠자'로 표기한 경우도 '노쇠자' 용어가 사용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노쇠자(老衰者)'는 사전적인 의미로 '늙어서 쇠약 하고 기운이 떨어진 사람'이다. 이러한 의미에는 고 연령자 집단의 고유한 특성을 열등한 것으로 부정 적으로 평가하는 차별적인 관점이 담겨 있다. 노쇠 자는 법용어로서 사용된 맥락과 의미에서도 차별적 인 관점이 발견된다. 2008년 이전에 법에서 노쇠자 는 생활보호를 받을 수 있고, 양로시설 또는 노인요 양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보호대상자이기도 했지만, 수형자인 경우에는 질병에 걸린 자에 준하여 처우 받고, 심신미약자와 같이 교육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자이기도 했다. 후자의 경우에 노쇠자는 수학능력이 부족하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자 혹은 교육 자체가 아예 필요 없는 자로 간주되고, 고연령자로서 가지 는 욕구와 필요가 고려되지 못한 채 정신적 · 신체 적 변화가 질병으로 해석되고 환자처럼 취급되는 사람이었다.

법에서 노쇠자의 범주는 고연령을 기준으로 정한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과거 법령 은 65세 이상의 노쇠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 고, 질병에 걸린 수용자에 준하여 처우하는 노쇠자 를 70세 이상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이처럼 연령기 준으로 노쇠자의 범주를 정한 경우에는 일정 연령 이상을 무조건적으로 쇠약하고 기운이 떨어진 자로 본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그런데 노쇠자 용어를 사용하면서 연령기준을 부가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시행과정에서의 구체적 타당성을 위해 개별적인 쇠 약 여부에 따라 법의 적용대상자를 구분하려는 의 도가 반영된 것이라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노쇠(老衰)'라는 용어 자체가 함의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고연령으로 인한 몸의 변화가 쇠약, 쇠퇴, 떨어짐 등으로 해석됨으로써 차별적인 대우가 정당 화되는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노쇠자는 고연령자를 지칭하는 다른 법용어와 다르게, '늙음'만이 아니라 '늙어서 정신과 신체적 기능이 저하됨'의 의미를 포

함하는 용어이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고연령자에 대한 차별적인 관점이 반 영된 '노쇠자'라는 명칭은 고연령자가 다수자와 '다 른' 사람으로서 기본적인 권리를 평등하게 보장받고 그 특성에 맞는 적정한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열등한' 사람으로서 차별적인 대우를 받도록 하는 규정들을 정당화하는 측면이 있다. 추측컨대, 이것 이 노쇠자 용어가 1950년부터 소수 법령에서 사용 되다가 2008년 이후에 페기된 이유일 것이다. 현행 법은 노쇠자 대신에 '노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거 나 연령기준만 남겨 두는 식으로 개정되었다.

'노약자'라는 법용어13)는 1979년에 제정된「도시 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같은 법은 일반도로 또는 보행자 전용도로는 신체 장애자 · 노약자 또는 어린이의 이용을 고려해야 한 다고 규정하였다(제10조). 1980년 「도시공원법 시행 규칙」(제6조 3항), 1982년 「건축법시행규칙」(제17조 2항), 1992년 「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 에 관한 규칙」(제8조) 등에서도 노약자를 신체장애 자 혹은 지체부자유자, 어린이와 함께 이동이 불편 한 자로 보고, 공원시설, 승강장, 계단 등을 만들 때 고려해야 하는 대상으로 규정하였다.

「외국간행물 수입배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1993년부터 2003년까지 노약자에 대한 학대 · 유기 행위를 묘사하여 사회윤리를 해치는 내용을 수록한 경우에 풍속저해간행물로 보았다(제3조). 이들 법에 서 노약자는 건강취약계층이기도 하고, 학대 · 유기 를 당하기 쉬운 자이기도 하다.

노약자 용어는 주로 장애인, 임산부, 어린이 등과 같이 나열되어 있으며, 거동이 불편하고 이동에 불 편을 겪는 자를 의미한다. 그리고 현행 「수난구호법 」은 노약자를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자로 보고 있으며(제29조 1항), 「제품안전기본법」(제4조 2항), 「소비자기본법」(제45조 2항), 「외국인보호규칙

<sup>13) 2011</sup>년 10월 20일을 기준으로 현행법 가운데 노약자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는 법률 6개, 시행령 9개, 시행규칙 7개로 총 22개이다.

」(제17조 3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87조 2항) 에서 노약자는 안전취약계층이나 건강취약계층으로 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자를 뜻한다.

'노약자'용어도 노쇠자와 유사하게 고연령자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과 차별적인 관점을 반영할 뿐 아니라, 그것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사 전적 의미로 노약자(老弱者)는 '늙거나 약한 사람'이 기 때문에, 노약자에는 늙은 사람만이 아니라 약한 사람도 포함된다. 하지만 실제 언어생활을 보면 노 약자가 '늙어서 몸이 약한 사람' 혹은 '약한 노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한 경우에 고연령자는 활동하고 능력을 발휘하 기 위한 토대가 되는 힘이 약한 사람이라는 편견이 강화될 수 있다. 물론 '약한 사람'이라는 평가는 고연 령자를 일정 영역에서 '보호'받을 수 있게 하지만, 약 하다는 평가 자체를 문제 삼지 못하면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약하다는 것이 자격제한 사유가 되어 활동 범위를 제약받고, 사회 경제적으로 배제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연령자를 정신적 · 신체적 능력이 모자라는 것이 아니라, '다 른' 능력과 기능을 가진 사람으로 위치시키는 것이 필요한데, 노약자와 같이 '노(老)'와 '약(弱)'이 더해 진 용어는 고연령자에게 '약자' 이미지를 덧씌운다.

노약자 용어가 사회문화적으로 사용되면서 갖게 된 의미와 어감은, 노약자가 법용어로 사용되는 경 우에도 반영되었다. 1979년부터 지금까지 노약자는 법에서 주로 '이동에 불편을 겪는 자'를 지칭해왔으 며, '건강취약계층'이나 '안전취약계층'을 의미하기도 하고, '수난구호업무를 감당할 수 없는 자'를 가리키는 데 사용되기도 했다. 또한 폐지된 법에서 노약자는 '학대·유기를 당하기 쉬운 자'이기도 했다. 노약자는 공통적으로 '신체적·사회적 약자'를 뜻하는 법용어로서 기능해왔다고 볼 수 있다<sup>14</sup>).

법에서 노약자는 주로 '이동에 불편을 겪는 자'를 지칭해 왔는데, 그것과 유사한 사용례들이 일상생활 에서도 발견된다. 대표적으로 대중교통시설 내의 '노약자석' 표시를 들 수 있다. 과거에 버스나 지하 철에 있던 '경로석'이 노약자석으로 바뀐 역사는 노 약자석을 노인석으로 오해하고, 노약자를 약한 노인 으로 인식하게 하는 데에 한 몫 한 것으로 보인다. 노약자석은 다시 '노약자 · 장애인 · 임산부 보호석' 으로 바꾸어 표시되다가, 최근에는 '교통약자(배려) 석'15)으로 표시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 '교통약자'는 2005년에「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제정되 면서 사용되기 시작한 용어이다.16) 같은 법에 따르 면, 교통약자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자, 어린이 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자(제2조)"이다. '교통약자'라는 새로 운 용어는 이동에 불편을 겪는 자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면서, 동시에 특정 소수자에게 약한 이미지를 부과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다. '교통약자' 용 어처럼 '특정 영역에서의 취약계층을 의미하는 용어 의 생성'은 '노약자'의 경우처럼 '특정 소수자와 약 자를 합한 합성어를 만드는 방식'과 '장애인등'17)과

<sup>14)</sup> 노약자와 비교해볼 수 있는 용어인 '병약자(病弱者)'의 경우에, 사전적으로 '질병으로 몸이 약한 사람'을 의미하 기 때문에 질병에 걸린 사람을 약자로 고정시키는 문제가 있었다. 법용어로서 병약자는 1962년부터 소수 법령 에서 사용되었지만 2010년을 기점으로 모두 폐기되었다.

<sup>15)</sup> 교통약자석 위에는 '임산부, 몸이 불편한 사람, 영유아동반인'을 상징하는 픽토그램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다른 모양의 픽토그램 아래에 '고령자분, 몸이 불편하신 분, 유아를 데리고 타신 분, 임신하신 분, 의료기기를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는 경우도 있다.

<sup>16) 2005</sup>년 이후에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주차장법 시행규칙」 등에서도 '교통약자'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sup>17)</sup> 현행「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에의 접근등에 불편을 느끼는 자"를 가리키는 데 사용하고 있다.

같이 '특정 소수자를 약자의 대표로 만드는 방식'을 피하면서, 다양한 소수자를 포괄할 수 있는 방법으 로 바람직하다.

#### 2. 사회적 보호 대상으로서의 '노인'

2011년 10월 20일 현재를 기준으로 볼 때, '노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법령(총 346개)18)은 '고령자' 를 명시하고 있는 법령(총 96개)보다 그 개수가 3배 이상 더 많다. '노령자', '노약자' 용어를 사용한 법 은 모두 합하여도 25개에 불과하다. '노인'은 1948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고연령자를 지칭하는 법용어로 서 가장 오랫동안 널리 사용되어 왔다고 할 수 있 다. 사전상으로 노인은 '나이가 들어 늙은 사람'을 뜻하는데 노인은 용어 자체에서 '늙음'을 뜻하는 한 자 '노(老)'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을 통해 확 인하지 않아도 '늙음'이라는 의미가 부각된다. 반면 에, 고령자는 한자어로 풀이하면 '많은 나이' 혹은 '나이 듦'이라는 의미가 강조된다. '늙음'은 본래적 으로 그 자체가 부정적인 뜻을 함축하는 것은 아니 지만, 연령주의 사회에서 오랜 기간 사용되면서 부 정적인 의미와 어감을 가지게 되었다. 사전을 찾아 보면, '늙다'의 의미는 "① 나이를 많이 먹다. 흔히 중년이 지난 상태가 됨을 이른다. ② 한창때를 지나 쇠퇴하다. ③ 어떤 신분이나 자격에 맞는 시기가 지 나다"로 나온다. 여기서 '늙음(老)'은 '나이 듦'과 동 일시되며, '쇠퇴', '신분이나 자격 미달' 등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사전적 의미는 실제 언어생활에서의 사용 례와 사회문화적 맥락이 반영된다. '노인'이라는 용 어는 전문가집단이나 언론매체의 언어적 실천과 일 상에서의 언어사용에 의해서, 부정적인 의미를 담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우리사회에서 노인은 '무기력 하다', '이제는 아무 힘이 없다'는 뜻을 함축하고 있 으며(남기심, 2010), '나이든 사람'을 통틀어 지시하 는 지칭어가 아니다. 지식인, 정치인, 재벌 등 사회 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노 인이라고 불리지 않으며, 그들도 스스로를 노인으로 정체화 하지 않는다(정희진, 2005). 이처럼 노인이라 는 용어가 '근대적 부문의 사회적 성취에서 소외되 어 궁핍하고 어려운 삶을 살게 된 고연령자'를 지칭 하는 용어로서 오랜 시간 동안 널리 사용됨에 따라 (정진웅, 2011), 많은 고연령자들이 노인으로 호명되 는 것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으며, 나이든 사람을 앞 에 두고 노인이라는 말을 호칭어나 지칭어로 사용 하는 것이 지양되고 있다.

이렇듯 노인이라는 말이 사회문화적으로 사용되 는 경향은 법에서 사용되는 사례와 연결시켜 볼 수 있다. 법에서 '노인'이라는 용어는 1948년 「내무부직 제 (제6조)와 1949년 「내무부사무분장규정」(제17조) 에서 '노인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등장하 기 시작했다. 1966년 「군인복무규율」에서는 군인은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해야 한다고 규정하였고(제27 조), 1970년에「보건사회부직제」는 사무분장 중 '노 인복지'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다(제12조). 과거에 노 인 용어를 사용한 법령 중에는 노인에 대한 법정책 의 내용을 규정하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었다. 노인 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정책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 는 것은 1981년에 만들어진 「노인복지법」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노인복지법 제정안」은 제안이유로 "우리사회의 전통적 가족제도에 연유하고 있는 '경로효친'의 미 풍양속을 유지·발전"을 명시하였다(노인복지법 의 안원문, 1981. 5. 8. 정부 제출, 의안번호: 110023). 1981년 제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노인복지법」은 노 인을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 여 온 자'로 설명하고 '존경' 받아야 한다(제2조 1항) 고 보고 있으며, '경로효친의 미풍약속'(제3조)과 노 인에 대한 '공경의식'(제6조)을 명시하고 있다. 2007 년에 제정된 「기초노령연금법」에서도 "노인이 후손

<sup>18) &#</sup>x27;노인' 용어를 사용한 법령으로 법률 183개, 시행령 106개, 시행규칙 57개가 있으며, '고령자'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법으로는 법률 47개, 시행령 37개, 시행규칙 12개가 있다.

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여 온 점을 고려하여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제1조)"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들은 노인에 대해 과거 사회적 기여를 인정하고, 존경받고 우대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본 것이다. 과거 기여를 인정한다는 것은 현재 사회경제활동(생산활동)에서 물러난 것을 전제한 것이며, '경로효친'은 존경심과 효사상을 바탕으로 부양대상이 되는 노인을 상정한 것이다.

1987년 이후 「대한민국헌법」에 따르면, 국가는 노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지며(제34조 4항), 노령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제34조 5항). 그리고 1997년에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하였다.

2005년 이후에는 고연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들이 연이어 제정되었는데, 그러한 법에서는 노인, 고령자, 고령, 노령 등의 용어가 혼용되었다. 2007년에 만들어진 「기초노령연금법」은 '노령연금' 수급자를 '노인'으로 명시하였고(제1조), 같은 해에 제정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제2조).

한편,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제108조 4항),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제4조 2항),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등에서 노인은 폭력과 학대로부터 보호대상자, 의료·양로·주거·여가복지 대상자, 피부양자, 연금수급자, 세금공제 대상자, 입장료 할인 등의 경로우대자, 교통약자, 영양취약계층, 지식정보취약계층

등을 의미한다. 법에서 노인은 주로 신체적·사회경제적 취약계층으로서 보호 대상이거나 보건복지조치의 대상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노인 용어는 피부양자, 연금 수급자를 지칭할 때 사용되었는데, 이는 노인이 개인적·사회적 이유로 인하여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거나 생업활동을 할수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전제한 것이다.

다음으로 법의 적용대상자가 되는 노인의 범주를 정한 규정을 살펴보면, 노인에 관한 대표적인 법률 이라고 할 수 있는 「노인복지법」은 제정 당시에 상 담·지도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양로시설이나 노인 요양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자는 65세 이상의 자 또 는 노쇠현상이 현저하여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 는 자로 한정하였다(제7조-제8조). 그리고 65세 이상 은 수송시설이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요금 을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9조). 이와 다르게, 현재 시행되고 있는 「노인복지법」에서는 보 건 · 복지조치를 받는 노인을 65세 이상의 자로 정 한 경우가 다수이며, 노쇠현상이 현저한 자로 규정 한 경우와 60세 이상으로 한정한 경우가 있다. 「노 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는 '노인등'을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정의한다(제2조).

#### 3. 생산적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고령자'

'고령자(高齡者)'는 사전19에서 '나이가 썩 많은 늙은 사람'을 뜻하지만, '나이가 많음'과 '늙음'은 상대적인 의미를 지닌다는 점에서 다양한 해석가능성이 열려 있는 용어이다. 법용어로서 '고령자'는 우리사회 전체인구의 연령 분포를 두고 볼 때 고연령인사람을 가리리키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특정 비교대상보다 나이가 많은 자를 의미하는 경우도 있다. 법에서 공무원의 승진순위를 정하는 조건으로 고령

<sup>19)</sup> 본 글에서 '사전적인 의미'는 모두 국립국어원 표준어국어대사전에서 검색한 결과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http://stdweb2.korean.go.kr/main.jsp 검색일자: 2012년 3월 10일~19일

자가 명시된 경우가 그러하다. 「경찰공무원 승진임 용규정」은 1969년 제정 이후부터 평정점이 동일한 때에는 고령자가 3순위에 해당한다는 조항(제31 조)20)을 가지고 있었다. 「지방소방공무원 심사승진 임용규정」은 1974년에 제정되어 1977년에 폐지될 때까지 동점자 중에서 고령자를 승진 4순위로 명시 하였고(제27조), 같은 내용의 조항은 1978년부터「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제12조)에 포함되어 현 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1991년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직제」에서 고용대 책과의 업무 중 하나로 "고령자등 유휴인력"의 활 용에 관한 사항(제16조 3항)을 정한 후부터 2005년 까지의 기간 동안, 새롭게 만들어진 법조문에서 고 령자는 모두 '근로능력이 있는 고연령자'를 의미하 였다. 1991년「고령자고용촉진법」제정을 시작으로 「고용정책기본법」(제25조),「근로자 직업훈련 촉진 법」(제3조 4항), 「근로자의 생활향상과 고용안정지 원에 관한 법률」(제21조 1항) 등은 고령자의 고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규정하였다.

1991년에 마련된 「고령자 고용촉진법안」은 "산업 인력의 부족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 여...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 지하려는 것"을 제안이유로 내세웠다.(고령자 고용 촉진법 의안원문, 1991. 11. 21. 이인제 외 의원 발의, 의안번호: 131420) 현행「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 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고령자의 고용안정 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제1조). 그리고 2005년에 제정된 「저출 산 · 고령사회기본법」(제11조 1항)은 "국가의 경쟁력 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법들은 국민경제 발전 혹은 국가의 경쟁력 차원에서 '고령 자/고령사회 문제'를 접근한 것이다. 여기서 '고령 자'는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나이 많은 사람이다.

2011년 10월 20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령 가운

데 고령자 용어를 명시한 조문이 있는 법은 총 96개 (법률 47개, 시행령 37개, 시행규칙 12개)이다. 고령 자에 대해 명시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법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유 일하다. 같은 법은 인구와 취업자의 구성 등을 고려 하여 고령자를 정의한다고 규정하면서, 시행령에서 고령자는 55세 이상, 준고령자는 50세 이상 55세 미 만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제2조 1항 및 2항). 이 러한 정의는 시행령이 만들어진 1992년부터 지금까 지 동일하다. 「소득세법」은 고령 용어를 사용하면서 연령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유일한 법률인데,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조건으로서 소유자가 자경할 수 없 는 사유가 되는 고령으로 65세 이상을 제시하고 있 다(제83조의33항). 그리고 2012년 2월에 제정되어 2012년 8월 시행예정인「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 자 지원에 관한 법률」은 주거약자에 해당하는 고령 자를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노인의 경우에 현실 언어 사용에서 만들어진 어감과 의미, 그리고 한자구성을 고려했을 때 '늙음(老)'은 나이듦을 부정적으로 평가 한 용어라고 할 수 있는 반면에, 고령자에서 '고령' 은 나이 듦에 대한 가치판단 없이 중립적으로 지시 하는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복지'와 짝을 이루 면서 오래 사용된 용어인 노인과 다르게, 고령자는 비교적 최근에 널리 사용되기 시작하였으며, 권리, 차별, 고용 촉진 등의 개념과 함께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것은 「노인복지법」과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명 의 대비에서도 드러나며, 노인이 등장하는 법의 목 적과 내용, 역사를 고령자가 등장하는 법의 그것들 과 비교해보아도 알 수 있다. 법에서 고연령자는 잔 여적 복지의 시혜대상으로 간주되었던 역사가 있지 만, 최근에는 노동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활동에 참 여하는 욕구와 권리의 주체로 재규정하는 사회적 경향을 법이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sup>20) 1983</sup>년 개정에서 선순위자 조건 가운데 고령자를 삭제하였다.

법용어 사용의 변천과정과 사용례를 검토해본 결 과, 적은 예외를 가지면서 비교적 특정한 의미를 지 닌 용어로서 사용된 것은 '고령자'라는 용어였다. 고 령자는 1964년에 '작업을 감당할 능력이 부족한 고연 령자'로 처음 등장했고, 이어서 승진 선순위자를 정 하는 조항에 사용되어 '특정 비교대상보다 나이가 많 은 자'를 뜻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다가 1991년 이 후부터 대부분의 경우에 고령자는 '근로능력이 있는 고연령자'를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현재까지 도 두 법률21)을 제외하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이거나, 아니면 근로능력을 인정받아 근 로를 제공할 수 있는 자를 지칭하는 용어는 노인이 아니라 고령자이다. 고령자 용어는 2005년에 들어서 면서 다양한 법적 맥락에서 사용되기 시작했는데, 과 거 법령에서는 주로 노동이나 고용 영역에서 고령자 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그 밖의 영역에서는 노인이라 는 용어를 사용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령자 용 어를 노동이나 고용 외의 영역에서도 빈번하게 사용 하기 시작한 것은 2005년 이후부터이다. 고령자 용어 가 주로 노동이나 고용에 관한 법에서 사용되었다가, 최근에 들어서 노동이나 고용이 아닌 법적 맥락에서 도 자주 등장하고 있다는 점은 의미심장하다.

## Ⅳ. 결론 및 논의

명명을 통해서 특정 범주의 사람들은 사회적 이미지와 역할을 부여받고, 사회구성원들은 특정 범주의 사람들에게 명명에 따른 이미지와 역할을 수행하도록 암묵적으로 요구한다(엄기정, 2000). 특정 범주의 사람들에 대한 언어적, 상징적 차원의 규정은 사회, 정치, 경제적 차원에서 이에 상응하는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다. 사용되는 용어가 대상의 특성을 드러내기 때문에(Herbert C. Covey, 1998), 차별적

인 용어들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달라졌는가를 보면 고연령자 집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가늠해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법에서 고연령자는 누구이며, 고연령자를 어떤 사람으로 상정하고 어떻 게 범주화하고 있는가를 법적 명명에 주목하여 분 석하고, 고연령자를 지칭하는 법용어가 갖는 의미를 비판적으로 고찰하였다.

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한국의 법규정에서 고연령자에 대한 명명은 노쇠자, 노인, 고령자, 노령자, 노약자 등 다양한 용어를 통해이루어져왔다. 그런데 이러한 명명은 고연령자 집단에 대해 연령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이루어진 것이아니었다. 그리고 범주화 규정이 없는 노약자 용어를 제외했을 때, 법용어인 노인, 고령자, 노령자는지칭하는 대상자의 범주가 다르지 않았다.

고연령자 집단에 대한 명칭의 차이를 법의 영역과 내용에 따라 고찰해 본 결과, '노쇠자', '노약자'와 같은 명명은 용어 자체에 '늙어서 정신과 신체적기능이 떨어지고 약해짐'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으며, 법규정의 영역과 내용도 주로 그러한 부분에 해당되고 있다. 이러한 명명은 고연령자를 약한 사람으로 환원하여 노인차별을 정당화하는 데 기여한다. 또한 '고령자'와 대비를 이루는 '노령자' 용어는 '노(老)'에 대한 부정적인 의미가 덧씌워져서 연령주의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 2009년 「국가정보화 기본법」 개정에서 노령자를 지우고 고령자로 고쳐 적은 것처럼, 현행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노약자'와 '노령자' 용어의 대체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노인이라는 명칭은 기존 연구를 통해용어의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음에도 법 규정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에서 노인이라는 용어는 피부양자, 연금 수급자, 폭력과 학대로부터 보호대상자, 보건 · 복지 대상자 등을지칭할 때 사용되었다. 즉 법에서 노인은 주로 신체적 ·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으로서 보호대상이거나 보

<sup>21) 「</sup>노인복지법」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서는 근로능력이 있는 자로서 고용 촉진 및 생업 지원 대상자 인 사람을 '고령자'가 아니라 '노인'으로 표기하였다.

건복지조치의 대상을 의미하였다. 이는 노인이 개인 적 · 사회적 이유로 인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거나 생업활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가 정이 전제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고령자라는 명칭은 현재 대부분의 법규 정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고연령자'를 의미하는 용어 로 사용되고 있다. '고령자'는 비교적 최근에 법용어로 서 널리 사용되기 시작하였으며, 권리, 차별, 고용 촉 진 등의 개념과 함께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우리나 라 법에서 고연령자는 주로 잔여적 복지의 시혜대상 으로 간주되어 왔지만, 최근에는 노동을 포함한 사회 활동을 비롯하여 다양한 욕구와 권리의 주체로 등장 하고 있는 추세와 맞물린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법규정에 나타난 고연령자에 대한 명 명을 살펴보는 작업을 수행한 후 몇 가지 사실들을 해석하여 법규정상 고연령자 명명의 의미구성이 내 용에 따라 구분된다는 것을 밝혔다. 결론적으로 법 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는 '노인'과 '고령 자' 명칭을 살펴본 결과, 현재 우리사회의 고연령자 에 대한 인식과 의미구성의 차이를 찾아볼 수 있었 다. 사회적 보호 대상으로서 부정적 의미가 내포된 기표로서 '노인'이라는 명칭이 사용되고, 생산성을 지닌 존재로서의 기표는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평가 를 받는 '고령자'라는 명칭이 주로 사용되는 경향을 통해서 고연령자 집단에 대한 사회적 가치 부여를 내비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연구의 말미에 한 가지 제언하고자 하는 점은, 고연령자의 생산적 능력을 중심으로 달라지고 있는 명명의 변화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사회구성원의 가치를 근로자의 역할 에서 찾는 생산성 위주의 사회에서는 교육-노동-은 퇴라는 생애단계에서 노동의 단계를 가장 중요시하 며 이를 생애단계에서 확장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 이 실린다(정경희 외, 2006). 이러한 사회적 가치 부 여는 최근 들어 고연령자 집단을 경제적으로 유용 한 자원으로 활용함으로써 고령화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데 중점을 두는 노년담론을 통해 뒷받침된다(박경숙, 2004, 최희경, 2010; Ju Hyun Kim, 2012). 이에 대해 사회적 생산능력이 있는 고 연령자에 대한 강조는 노년에 대한 사회적 평가로 작용하며 그렇지 못한 노인들은 주변화 되고 이들 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강화될 수 있음에 대한 환기 (喚起)가 요구된다.

사회가치를 실현하는 동시에 강제적인 집행력을 가지고 있는 법률이라는 규범을 통해 고연령자 집단 을 명명함에 있어서, 고연령자의 존엄과 기본권을 고 려한 명명이 고민되어야 할 것이며 나아가 입법자의 주의 깊은 각성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법적 명명 이 고연령자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를 비롯하여, 다른 사회의 법률용어에서 고연령 자에 대한 명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는 비교법적이고 법사회적인 연구들이 진행되어야 한다.

## 참고문헌

김미애(2004). 60세 이상 인구의 명칭에 대한 대학생의 평가적 태도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노년학, 24(1), 149-167.

김수완 · 백승호(2011). 복지국가 재편의 경로의존성: 공 적연금 제도구조와 급여관대성 및 지출수준에 관한 비교연구. **사회복지연구. 42**(1), 433-460.

남기심(2010). 나이든 이를 가리키는 말. **나이든 이에 대** 한 바람직한 호칭, 한국 골든에이지 포럼 세미나 자료 집 (미간행).

박경숙(2004). 연령주의 사회와 법. **사회적 차별과 법의** 지배, 서울대학교 BK21 법학연구단 공익인권법센터 2차 학술대회자료집, 59-78.

박정미(2011). 한국 성매매정책에 관한 연구: '묵인-관리 체제'의 변동과 성판매여성의 역사적 구성, 1945-2005 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송기민·최호영(2010). 고령화시대 노인 연령규범에 대

- 한 현행 법제적 고찰. **法과政策研究, 10**(3), 989-1008. 엄기정(2000). **상행위에서의 호칭 사용에 대한 사회언어 학적 연구.**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이금룡(2005). 한국사회의 노년기 연령규범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6(1), 143-159.
- 이석규 역(2002). 마드리드 고령화 국제행동계획. **노인복** 지연구, 17, 237-295.
- 이철희(2006). 미국 고령인구의 경제적 지위변화와 복지 국가의 형성. **경제사학, 40**, 119-175.
- 임춘식(1999). **9**9 세계노인의 해의 의의와 우리나라의 과 제. **노인복지연구, 3**, 61-79.
- 정경희·한경혜·김정석·임정기(2006). 노인문화의 현황과 정책적 함의-'성공적 노화' 담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
- 정진응(2011). 노년 호명의 정치학. **한국노년학, 31**(3), 751~765.
- 정희진(2005). **페미니즘의 도전.** 교양인.
- 주창윤(2011). 젠더 호명과 경계짓기. 한국사회의 소통 위기: 진단과 전망, 한국언론학회 심포지움 자료집(미간행).
- 최호영(2010). 노인권리의 국제 기준에 대한 소고. **한양고 령사회논집, 1**(1), 105-138.
- 최희경(2010). '신노년' 정책 담론에 대한 비판적 재검토 -활동적 노화, 성공적 노화, 생산적 노화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정책, 17(3), 41-65.
- 통계청(2012). 2011 농림어업조사. 통계청
- Achenbaum, W. A.(1985). Societal perceptions of aging and the aged, In R. Binstock & E. Shanas (Eds.). Handbook of aging and the social sciences, New York: Van Nostrand Reinhold. 129-148.
- Barbato, C.A., & Feezel, J.D. (1987). The language of aging in different age groups. *The Garantologist* 27(4), 527-531.
- Chafetz, P. K., Holmes, H., Lande, K., Childress, E., & Glazer, H. R.(1998). Older adults and the news media: Utilization, opinions, and preferred reference terms. *The Gerontologist*, 38. 481-489.

- Cowgill, D., & Holmes, L.(1972). *Aging and modernization*. NewYork: Century & Crofts.
- Latika Vasil & Hannelore Wass(1993). Portrayal of the elderly in the media: A literature review and implications for educational gerontologists. *Educational Gerontology*, 19(1), 71~85.
- Elizabeth S. Kelchner (1999). Ageism's Impact and Effect on Society.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ork*, 32(4), 85-100.
- Frank H. Nuessel, Jr.(1982). The Language of Ageism. *The Gerontologist*, 22(3), 273-276.
- Herbert C. Covey(1998). Historical Terminology Used to Represent Older People. *The Gerantological Society* of America, 28(3), 291-297.
- Ju Hyun, Kim(2012). The Comparison of Strategies Combating Ageism among Korea, Japan, and US. *Korean Journal of Sociology*, 46(3), 93-113.
- Maddox, G.(1970). Themes and issues in sociological theories of human aging. *Human Development*, 13, 17-27.
- Palmore, E.(1999). *Agaism: Negative and Positive(2nd Ed)*. NY: Springer.
- Palmore, E.(2000). Ageism in gerontological language. *The Gerontologist*, 40(6), 645.
- Palmore, E. & Manton, K.(1974). Modernization and status of the aged: International correlations. *Journal of Gerontology*, 29, 205-210.
- Settersten Jr., Richard.(2003). Age Structuring and the Rhythm of the Life Course. Edited by Jeylan T. Mortimer and Michael J. Shanahan. *Handbook of the Life Course* Kluwer Academic/Plenum Publisher. 81-103.
- United Nations (2002). Report of the Second World Assembly on Aging. UN.
- United Nations(1999). Principles for the Older Persons, http://www.un.org/esa/socdev/ageing/un\_principles.html.

<부록 표 1> 고연령자에 관한 법용어와 함께 명시하고 있는 연령기준 (2011년 10월 20일 기준)

| 법용어          | 연령                     | 법조문 내용  | 근거법                                  |
|--------------|------------------------|---|--------------------------------------|
| -<br>노인<br>- | 65세<br>이상              | 건강진단·보건교육·경로우대·상담·지도·생업지원 대상자, 노<br>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경로당 이<br>용가능자 | 노인복지법                                |
|              |                        | 교정시설에서 그 처우에 있어 적정한 배려를 받는 노인수용자  |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령                  |
|              | 60세<br>이상<br>65세<br>미만 | 입소비용 전부 부담 조건으로, 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노인요<br>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재가노인복지시설에 입소가능자        | 노인복지법                                |
|              | <b>60</b> 세<br>이상      | 노인복지주택 입소대상자, 노인복지관·노인교실·노인휴양소 이용<br>가능자                                    | 노인복지법                                |
|              |                        | 생계형 저축자로서 비과세 적용을 받는 노인   | 조세특례제한법                              |
|              |                        | 60세 이상 노인의 치료를 담당하는 의료인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br>가정폭력범죄 신고의무 있음                      |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 노인등          | 65세<br>이상              |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br>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 고령자 -        | 65세<br>이상              | 주거약자에 해당하는 고령자  | 장애인·고령자등주거약자지원에관한법률<br>(2012.8.시행예정) |
|              | 55세<br>이상              | '고령자'정의   |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br>한법률시행령        |
| 고령           | 65세<br>이상              |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조건으로서 소유자가 자경할 수 없는 시유가<br>되는 고령                               | 소득세법                                 |
| 준고령자         | 50세<br>이상              | '준고령자'정의  |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br>한법률시행령        |
| 노령자          | 60세<br>이상              |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취업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노령자  |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br>시행규칙          |
| 노령 -<br>노령 - | 65세<br>이상              |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 기초노령연금법                              |
|              |                        | 노령화지수란 65세 이상 인구수를 14세 이하 인구수로 나눈 비율  |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br>률시행령          |
|              | 60세<br>이상              | 특수직종근로자가 아닌 경우 노령연금 수급자   | 국민연금법                                |
|              | 55세<br>이상              | 특수직종근로자의 경우 노령연금 수급자  | 국민연금법                                |

#### 韓國老年學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2012, Vol. 32, No. 4, 1147~1162.

## Critical Contemplation on the Naming of Older Persons in Legal Provisions

Kim, Ju Hyun · Kim, Ji Hye
Research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Commissioned Researcher,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Korean laws use several different terms to refer to seniors. This study looks into how older persons are defined in the laws with an aim to critically review the implications of the naming of older persons. For this goal, the laws that have been enforced since 1948 and those effective as of October 20 in 2011 were subject to analysis. The findings of this research are as the following. Korean laws have used a number of terms, including the terms meaning the old and infirm (nosoeja), old individuals (noin, goryeongja, noyeonja), and the old and weak (noyakja). However, such naming does not seem to be based on age. An analysis of noin and goryeongja, two most common terms used in Korea's legal provisions, shows the difference between social perceptions of seniors and the semantic formation of the terms. For example, noin is used in the context in which seniors are viewed rather negatively as subjects of social protection while goryeongja, a relatively neutral term, is preferred when the law sees the elderly as productive resources. It can be said that the perceived social values on senior citizens are reflected in the laws.

Key words: legal terms, age discrimination, older adults, naming of older persons, social values